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2199 제출연월일: 2024. 7. 24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의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등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어장정화·정비업의 등록 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어장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제1항제3호 중 "경우"를 "경우."로 하고,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) 제20조제1항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 ① 시ㆍ	제20조(등록의 취소 등) ①		
도지사는 어장정화 · 정비업의			
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			
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			
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			
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			
수 있다. 다만, 제1호나 제2호에			
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			
다.			
1.・2. (생 략)	1.•2. (현행과 같음)		
3.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 기	3		
준에 미달하게 된 <u>경우</u> <u><단서</u>	<u>경우.</u> 다만,		
<u>신설></u>	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		
	<u>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</u>		
	로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등		
	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		
	예외로 한다.		
4. (생 략)	4. (현행과 같음)		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		